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5. 26 선고 2020가단660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이원창

피 고 1. A

2. B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도영

3. C

변 론 종 결 2021. 4. 28.

판 결 선 고 2021. 5. 26.

주 문

1. 피고 C과 D 사이에 이천시 E 답 1,323㎡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C은 D에게 이천시 E 답 1,323㎡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3. 30. 접수 제17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 A에 대한 청구: 피고 A과 D 사이에 이천시 E 답 1,323㎡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A은 D에게 이천시 E 답 1,323㎡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3. 30. 접수 제17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에 대한 청구: 피고 B과 D 사이에 이천시 E 답 1,323㎡ 중 100/1,323 지분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B은 D에게 이천시 E 답 1,323㎡ 중 100/1,32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3. 30. 접수 제17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C에 대한 청구: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F 주식회사(다음부터 ‘F’이라 한다)가 소유하던 이천시 E 답 1,323㎡ 중 298/1,323 지분(다음부터 ‘이 사건 전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2.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D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2016. 3. 14. 경료되었다.

2) 2020. 3. 30. 위 지분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위 지분 중

100/1,323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2020. 3. 30. 매매(다음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경료되었다(위 각 지분을 다음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나. 원고의 주장

별지 기재 중 피고 A, B에 대한 부분과 같다.

다. 판단 - 이 사건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여부

1) 피고 A, B의 주장

D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 A, B이 공동으로 1/3씩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매수인 명의는 D으로하기로 하였다. 또한 F은 그 당시 D과 피고 A, B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전체 지분을 매수한다고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F에 있고, D의 책임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책임재산이 아닌 이 사건 각 지분을 피고 A, B에게 이전하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가 아니다.

2) 이 사건 각 지분이 D의 책임재산인지 여부

가) 인정사실

을 제1 내지 3, 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① D이 피고 A, B보다 납부한 매매대금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는 D이 이 사건 전체 지분의 소유명의자로 세금 등 각종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것은 아닌 점, ② 피고 A, B은 그 스스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변하는 점 등을 더하고, 을 제4호증의 기재까지 종합하면, D이 F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지분을 매수할 당시 피고 A, B이 공동으로 1/3씩 매수하기로 하였으나, 그 매수인 명의는 D으로하기로 하였음과, F은 그 당시 D과 피고 A, B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전체 지분을 매수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1) D과 피고 A, B은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2010년경 만나 서로 알고 지내 왔다.

(2) D은 2015. 11. 11. F으로부터 이 사건 전체 지분을 대금 261,9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5,000,000원은 체결일에 지급하고, 잔금 226,900,000원은 2015. 11. 26. 지급하기로 하였다.

(3) D, F, 피고 A, B 사이에 지급된 돈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지급 연월일	지급 시간	지급자	수령자	금액
2015. 11. 11.	11:40	D	F	35,000,000원
2015. 11. 24.	10:40	G(피고 B의 배우자)	D	100,000,000원
2015. 11. 25	13:12	D	F	100,000,000원
2015. 11. 30.	09:57	D	F	100,000,000원
2015. 11. 30.	10:00	D	F	39,250,000원
2015. 11. 30.	17:57	피고 A	D	100,000,000원

(4) D은 2015. 3. 14. 이 사건 전체 지분에 대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등 세금 8,904,600원을 납부하였다.

나) 관련법리

(1)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이 적용되어 명의수탁자인 채무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등 참조).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재산이 아닌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으며,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54104 판결 참조).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도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그 매매계약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소유자에게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0다95185 판결 참조)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A, B이 명의신탁자로 D이 명의수탁자로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고 D이 F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지분을 매수한 것이고, 매도인인 F도 위 명의신탁약정을 알면서 매도하였다고 인정되므로, D 명의의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는 무효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지분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도 매도인인 F의 소유일 뿐이므로, D의 책임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

3) 소결

D이 자신의 책임재산이 아닌 이 사건 각 지분에 관하여 피고 A, B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해행위라고 할 수 없다.

라. 소결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별지 기재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과 같이 주장하고, 피고 C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피고 C과 D 사이에 이천시 E 답 1,323㎡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202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은 D에게 이천시 E 답 1,323㎡ 중 99/1,323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3. 30. 접수 제1721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A, B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차윤제

별지

청 구 원 인

1. 신용보증약정 등

가. 소외 합자회사 H(이하, '소외회사'라고 합니다)은 원고와의 사이에 2019. 1.

24. 신용보증원금 255,000,000원, 보증기간 2019. 1. 24.부터 2020. 1. 2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한 후,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해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기업은행에 제공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금300,000,000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나. 원고와 소외회사 사이에 위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될 당시, 소외회사는 위 신용보증기간 중 위 신용보증원금의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보증원금 및 이에 대한 종속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보증채무액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동 시행령, 기금의 업무방법서 및 신용보증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하는 이율의 지연손해금, 보증료, 과태료, 위약금, 원고가 구상채권의 실행 또는 보전을 위하여 소요된 법적절차비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소외 D은 소외회사의 대표자이자 상법 상 무한책임사원으로 회사의 채무가 완제될 때까지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 원고의 대위변제

소외회사가 2020. 3.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킴에 따라 원고는 소외회사를 대위하여 2020. 8. 7. 기업은행에 256,349,708원을 지급하였다.

2. 신분관계

소외 D은 원고의 채무자이고, 피고들은 D과 거래관계에 있거나 친인척지간입니다.

3.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에 대하여, 위 D은 피고 A, B, C과의 사이에 2020. 3. 30.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3. 30. 접수 제1721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4.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원고의 구상금채권이 아직 성립하지는 않았으나, 그 당시 구상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신용보증약정이 위와 같이 체결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위 법률관계에 기하여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2020. 3. 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되었고 원고는 대출은행에 보증금원을 대위변제하였

습니다.

나. 소외 D의 무자력

위 매매계약이 체결될 당시, D은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제외하고도 타에 채무가 많아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 사해행위

이미 채무초과로 무자력 상태에 있는 D이 위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들과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특별채권자에게만 채권만족을 하게 하는 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 층 더 부족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5. 결 론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의 각 지분에 대하여, 소외 D과 피고 A, 피고 B, 피고 C 사이에 2020. 3. 3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A, 피고 B, 피고 C 은 위 D에게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2020. 3. 30. 접수 제17216호로 경료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